



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

2017.12.18

2020.02.19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87조 및 제112조,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함) 제89조, 제90조, 제91조 및 제113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, 방법,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관주의) 회사는 신탁재산(집합투자재산 및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은 경우의 투자일임 재산을 합한 재산)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개정 및 외부전문기관 선정 등) 이 지침을 개정하거나, 외부 전문자문기관을 선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「수탁자책임위원회」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,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2장 행사기준

제4조(행사에부 등) 회사는 「수탁자책임위원회」에서 정한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되는 주식에 대하여 최대한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행사방향)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,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
1. 주주의 권익 보호
2.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
3.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
4.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
5. 기업의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

제6조(중립적 투표)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의결권을 행사 할 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(Shadow voting)를 행하여야 한다.

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
 - 가.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영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
 - 나.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1) 관계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
 - 2) 회사의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)
2.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
 - 가.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
 - 나.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1) 관계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
 - 2) 회사의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)
3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의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(이하 이 조에서 "주요의결사항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이라 한다)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1.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)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
2. 회사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(중립적 투표)

③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(shadow voting)를 해야 한다. 다만,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선임, 그 밖에 이에 준하는



사항으로서 투자일임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
 - 가.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 보유자
 - 나.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투자일임업자의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2.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투자일임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
 - 가.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
 - 나.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투자일임업자의 대주주
3.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적절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7조(행사금지)

-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1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② 회사는 법98조2항9호다목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, 그 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1.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
 2.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

제8조(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)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6조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제7조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¹ (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) 가.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(영 제80조제1항3호;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) 나.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.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(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(제189조의 수익증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,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)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행사방법

제9조(행사주체)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,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이 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수탁자로서의 주주활동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찬부를 행사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.

제10조(서면행사 등) 회사는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11조(불통일 행사) 회사는 각 신탁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².

제4장 행사절차

제12조(주주총회 개최 파악) ① 회사는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,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사결정)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,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해당 종목분석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담당자의 협조와 리서치담당임원(또는 본부장·팀장, 이하 동일)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② 종목분석담당자 또는 리서치담당임원은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수탁자책임위원회」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.

④ 회사는 주주 혹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가

² 상법 제368조의2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



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[별첨]양식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「수탁자책임위원회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의견청취 및 자료제출) 중목분석담당자 또는 리서치담당임원은 신의성실,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기관을 활용하여 의결권 행사방안 및 이해상충 점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은 회사가 한다.

제5장 공시 등

제15조(공시)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제8항 및 법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는 제4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(중립적 투표)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
2.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법 제87조제7항³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
3.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: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

② 회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시는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기록유지 및 홈페이지 공개) ① 회사는 법 제87조제7항 및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「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」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)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② 리서치담당임원은 제4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법인 전체에 대하여 「수탁자책임위원회」에 보고하고 기록·유지 하여야 한다.

³ (법 제87조제7항)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”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)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에 따라 기록·유지 하여야 한다.

(영 제90조)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”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.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 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)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.



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
제17조(내부통제)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의 준수 상황을 점검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지침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지침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이 지침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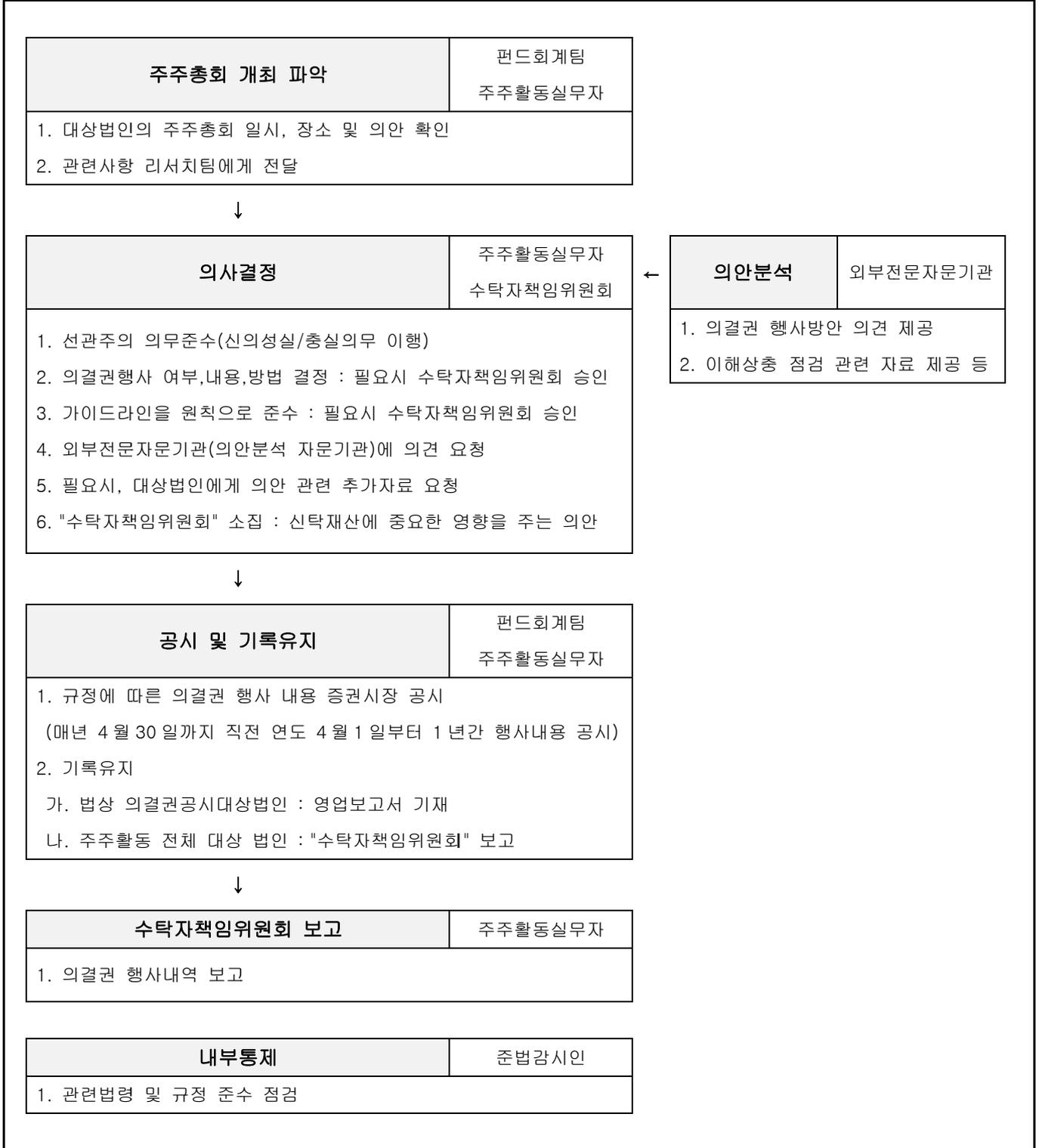
제4조 이 지침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이 지침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『수탁자책임위원회』 의결 사항으로 변경 시행한다.

제6조 이 지침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트러스트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절차 및 공시 프로세스





[별첨1]

주주총회 의안 검토

담당자	리서치담당 임원(본부장)	수탁자책임 위원장

- ▣ 검토일 :
- ▣ 작성자 :
- ▣ 대상법인 :
- ▣ 주총일시 :
- ▣ 주총구분 : 임시/정기

의안번호	부의의안	검토내용	행사 내용	관련 가이드라인 조항
제 1 호의안				
제 2 호의안				
제 3 호의안				
제 4 호의안				
제 5 호의안				

*행사내용: 찬성, 반대, 중립, 불행사

- ▣ 전체수량 :
- ▣ 행사가능의결권 수량 :

트러스트자산운용(주)